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무관, 징수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처리사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참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현행화(안 제4조)
- 나. 「지방회계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준용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 준용(안 제8조)
- 다.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준용 규정 신설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지방회계법」 제46조
- (2) 「지방기금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2. 8. 30. ~ 9. 2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지방회계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 략) ②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 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 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 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 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 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 년 평균금액의 115%를 초과 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3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. ~ 4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회계공무원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회계공무원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 ③ 「지방회계법」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

<u><신 설></u> <u>제9조 · 제10조</u> (생략)	<u>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u> <u>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</u> 이 조례 <u>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 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」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 다.</u> <u>제10조 · 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
---	--

□ 지방회계법

제4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□ 지방기금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